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개정사규 확정, 공포(임직원행동강령)

사규관리규정 제7조,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안을 확정·공포합니다.

1. 개정사규 및 주요내용

규정 명칭	입안 부서	구분	내용
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	행정 감사부	개정 이유	○ 국민권익위원회 「공직자 외부강의제도 개선방안 권고」 사항을 이행,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우리 공사의 청렴도 향상 및 국민권익위원회 '부패방지 시책평가' 등 외부평가 성과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		개정 내용	○ 외부강의 대가기준(상한액)에 원고료 포함 ○ 외부강의·회의 등의 횟수·시간 제한 -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·회의 등(강의·강연·발표·토론·자문 등)에 대해 월 3회·6시간으로 제한 ○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

2. 공 포 문 : 첨부참조
3. 공 포 일 : 최종결재권자 결재일
4. 시 행 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붙임 공포문_임직원행동강령(규정제639호). 끝.

법 무 지 원 실 장

수신자 SH부01~71, SH센터01~11

부 원	김채원	법무지원실장	강기언	기획경영본부장	김우진	사장	03/29 변창흠

협조자

시행 법무지원실-975 (2016.03.29) 접수 ()
방침번호 사장 방침 제263호
우 138-201 /
전화 3410-7128 전송 3410-7131 / cw0131@i-sh.co.kr / 공개